##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35 발의연월일: 2025. 1. 6.

발 의 자 : 윤준병 • 서영석 • 박희승

정동영ㆍ허 영ㆍ허종식

서영교 • 박민규 • 문대림

김태선 · 강준현 · 조계원

민형배 • 이워택 의워

(14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임도(林道)는 도시민의 산림휴양 및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산림의 적정한 유지·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 기 위한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임.

특히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,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더해,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의 부동의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 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임도의 설치 및 유지·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현행법과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등).

#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23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#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「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 도(林道)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 의 설치를"을 "조성을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		
1. "산림"이란 다음 각 목의 어	1		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			
한다. 다만, 농지, 초지(草地),	<u>,</u>		
주택지, 도로, 그 밖의 대통령			
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			
입목(立木)·대나무와 그 토			
지는 제외한다.	<u>.</u>	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		
라.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	라. 「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		
위하여 설치한 도로[이하	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		
"임도(林道)"라 한다]	따른 임도(林道)		
마. (생 략)	마. (현행과 같음)		
2. ~ 10. (생 략)	2. ~ 10. (현행과 같음)		
제9조(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	<u>&lt;삭 제&gt;</u>		
등) ① 산림청장, 시ㆍ도지사			
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산			
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			
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			
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			
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・			
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			

- 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(이 하 "산림관리기반시설"이라 한 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산림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산림관 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, 적합성,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.
- ③ 산림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산림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산림관 리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한 후 이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⑤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,설치 절차, 관리 방법, 그 밖에

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.

제65조(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조받거나 지 원받은 금액(이하 "산림사업보 조금"이라 한다)에 이자를 더 한 금액을 산림청장, 시·도지 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 게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산 림의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 시설의 설치를 끝낸 때부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 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 다.

- 1. 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
- 2. (생략)
- ② (생 략)

제65조(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)
①
<u>조성을</u>
<u>&lt;삭 제&gt;</u>
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